



2024.04.17 준법감시인-3592 심의필 (유효기간 2025.12.31.)

「우리아이행복통장」 핵심설명서

< 기본정보 >

상품특징	▷ 부모와 자녀가 가입할 수 있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으로 금리우대 및 수수료 혜택 제공											
적용이율 (24.04.17 세금납부전 기준)	▷ 아래의 이율은 2024.04.17 세금납부 전 기준 이율이며 신규당시의 이율은 실제로 통장에 인자된 이율이 적용됩니다.											
<table><thead><tr><th>우대조건 충족 유무</th><th>100만원 이하</th><th>100만원 초과</th></tr></thead><tbody><tr><td>충족시</td><td>연 1.0%</td><td>연 0.1%</td></tr><tr><td>미충족시</td><td>연 0.1%</td><td>연 0.1%</td></tr></tbody></table>				우대조건 충족 유무	100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	충족시	연 1.0%	연 0.1%	미충족시	연 0.1%	연 0.1%
우대조건 충족 유무	100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										
충족시	연 1.0%	연 0.1%										
미충족시	연 0.1%	연 0.1%										
우대조건	▷ 이 예금으로 전월 기준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 충족 시 1. 우리유후적금 또는 우리아이행복적금으로 월 10만원 이상 자동이체 시 2. 우리카드사 아이사랑카드, 아이행복카드 또는 우리국민행복카드의 결제 계좌로 지정하고 결제실적이 있는 경우 3. 우리아이행복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자동이체 시											
이자지급일	▷ 매월 셋째주 토요일에 원금에 더함											
예금자보호	○	▷ 원금과 이자 포함 5천만원까지 가능										

⚠ 유의사항 * 반드시 확인하시고 의문점은 창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의 전환	▷ 이미 가입된 일반 저축/보통예금은 '우리아이행복통장'으로 전환 가능
이자계산 방식	▷ 이자계산 기간 동안 매일의 최종 잔액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계산함 - 이자계산기간 : 예금일 또는 지난 원가일로부터 원가일 전날까지의 기간 - 이자결산일 : 매월 셋째주 금요일 - 이자지급일 : 이자결산일 익일

*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시 불필요한 계좌를 정리할 수 있으며, 휴면계좌통합조회서비스 이용시 휴면계좌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

2024.04.17 준법감시인-3592 심의필 (유효기간 2025.12.31.)

「우리아이행복통장」 상품설명서

-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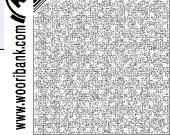
1 | 상품 개요 및 특징

- 상 품 명 :「우리아이행복통장」
- 상품특징 : 부모와 자녀가 가입할 수 있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으로 금리우대 및 수수료 혜택 제공

2 | 거래 조건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돋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이며,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 또는 증서에 표시됩니다.

구 분	내 용									
가입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명의 개인 (1인 1계좌)									
상품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통예금, 저축예금									
거래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 : 영업점• 해지 : 영업점, 인터넷(스마트)뱅킹 <p>※ 개설기간 1개월 미만 계좌이거나 잔액 100만원 초과 계좌 또는 연결계좌보유 계좌는 영업점 방문 해지만 가능</p>									
우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예금으로 전월 기준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 충족 시<ol style="list-style-type: none">1. 우리유후적금 또는 우리아이행복적금으로 월 10만원 이상 자동이체 시2. 우리카드사 아이사랑카드, 아이행복카드 또는 우리국민행복카드의 결제 계좌로 지정하고 결제실적이 있는 경우3. 우리아이행복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자동이체 시									
적용이율 (24.04.17 세금납부전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래의 이율은 2024.04.17 세금납부 전 기준 이율이며 신규당시의 이율은 실제로 통장에 인자된 이율이 적용됩니다. <table><thead><tr><th>우대조건 충족 유무</th><th>100만원 이하</th><th>100만원 초과</th></tr></thead><tbody><tr><td>충족시</td><td>연 1.0%</td><td>연 0.1%</td></tr><tr><td>미충족시</td><td>연 0.1%</td><td>연 0.1%</td></tr></tbody></table>	우대조건 충족 유무	100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	충족시	연 1.0%	연 0.1%	미충족시	연 0.1%	연 0.1%
우대조건 충족 유무	100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								
충족시	연 1.0%	연 0.1%								
미충족시	연 0.1%	연 0.1%								



구 분	내 용	
이자지급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금의 이자 결산은 매월 셋째 주 금요일에 실시하며, 결산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직전 영업일에 계산하여 그 익일(원가일)에 원금에 더함 ※ 예금의 이자는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이자에 원금을 더하지 않고, 계좌해지 또는 추가 입출금 거래 발생일에 일괄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자 산출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일 최종잔액에 대하여 약정한 금리를 적용하여 원가일(원가에 이자를 지급하는 날)에 이자 지급 ※ 예금일 또는 지난 원가일로부터 원가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이자 계산 기간으로 함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수수료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수료 면제 횟수는 월 10회(①+②) <o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대조건 충족 시 ⇒ 전자금융(인터넷, 스마트, 텔레뱅킹) 이용한 다른은행 이체수수료 및 우리은행 자동화기기 영업시간 외 현금출금 수수료 면제 우대조건을 충족하면서 전월 우리 아이행복(사랑)카드, 우리국민행복카드 사용실적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 우리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다른은행으로의 이체수수료 면제 	
스윙서비스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정금액 이상 잔액을 고객이 지정하는 적금으로 자동 이체하는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윙서비스 선택한 경우에 한하여 통장잔액이 고객이 지정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이 고객이 지정한 적금계좌(자유적립식)로 자동이체 매 영업일 영업종료 후 잔액에 대해서 스윙서비스 제공되며 스윙된 금액이 다시 입출금 계좌로 백스윙되는 것은 불가함 통장과 적금의 예금주가 상이해도 스윙서비스 가능 	
적용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상일반세율은 이자소득의 15.4% (이자소득세(14.0%)+지방소득세(1.4%)) ※ 적용세율은 2024.04.17 현재의 세율이며,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예금자보호 여부	<p style="text-align: center;">해당</p> <div style="background-color: #e0f2e0; padding: 5px; border: 1px solid #0070C0;"> <p style="margin: 0;">예금보험공사</p> <p style="margin: 0;">보호금융상품</p> <p style="margin: 0; font-size: small;">1인당 최고 5천만원</p> </div>	<p>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p>
세제혜택	<p style="text-align: center;">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구 분	내 용
상품의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미 가입된 일반 저축/보통예금은 '우리아이행복통장'으로 전환 가능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예금의 우대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다음달 16일부터 금리우대 및 수수료면제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단, 다음 달에 우대조건을 다시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달 16일부터 우대적용이 재개됩니다.
거래중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입출금, 잔액조회, 이관 등의 거래 제한 <ol style="list-style-type: none"> 예금잔액이 10,000원미만이며, 1년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예금잔액이 10,000원이상 50,000원미만이며, 2년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예금잔액이 50,000원이상 100,000원미만이며, 3년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거래를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 및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한 후 가능
휴면예금 및 출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자료열람 요구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연계·제휴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사항 없음

구 분	내 용
위법 계약 해지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주1)}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단,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이고 계약이 종료하기 전일 것)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그 해지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거나 또는 거절사유와 함께 거절을 통지하여야 하고,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소비자의 계약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은행은 금융소비자에게 수수료, 위약금 등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p>주1) 부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한 경우(제17조 제3항), 적정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해 부적정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제18조 제2항),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한 경우(제19조 제1항, 3항),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제20조 제1항), 부당권유행위의 금지(제21조)</p>

3 | 유의 사항

- 매월 마다 지난달 1일부터 말일까지 우대조건 충족여부에 따라서 수수료 혜택 및 금리우대 혜택이 제공되며 우대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수수료 및 금리우대 혜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동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서류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걸쳐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문서입니다.

〈부록〉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어	설명
압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가압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질권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출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